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2. 8. 30.(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2. 8. 19.
- 회부일 : 2022. 8. 22. (의안번호 : 22 - 67)

2. 제안이유

- 민선8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운영을 위한 현재 규모의 정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개정(안 제1조)
- 조례 제1415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 제2조 개정
-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마포1번가연구단의 존속기한으로 하는 부칙 개정
- 본청 일반직 5급 △1, 일반직 6급 이하 △2
- 현재 규모의 정원 내에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정원 증원 추진
- 본청 일반직 5급 +1(기구개편), 일반직 6급 이하 +2
(현안사업 추진 및 기준인건비 배정인력)
- 총 정원 변동 없음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민선8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운영을 위한 현재 규모의 정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이 2022. 1. 13.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상 인용 법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을 “제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으로 변경하고
-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부칙에 명시한 제2조 중 “한시정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마포1번가연구단의 존속기한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임.

-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마포1번가 한시기구 존속기한 정비를 위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마포1번가 한시정원 5급 1명, 6급 이하 2명을 감한 인원을 일반적으로 재배치하여 총정원은 1,448명 변동 사항은 없음.

- 다만, 이번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정원 변경내용은 변동이 없으나 육아휴직 등으로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여 직원들 업무가 가중된 점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가 인력개편에 따른 용역을 시행중인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의견수렴시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현실성 있는 마포구 정원배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

라 의회의 인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비율변경내용》 - 변동 없음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현행> 비율	(1)% 이내	(5)% 이내	(22)% 이내	(33)% 이내	(33)% 이내	(5)% 이상	(1)% 이내
<개정> 비율	<현행과 같음>						

※ [별표 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변경내용》 - 변동 없음

기관별 직급별	현행						개정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총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사업소	동	
총계	1,448	1,448						<현행과 동일>					
일반직계	1,437	1,437											
3급	1	1											
4급	8	6	1	1									
5급	63	36	1	9	1	16							
6급 이하계	1,364	1,364											
전문경력관계	1	1											

※ [별표 3]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3.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